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99
----------	-------

발의연월일 : 2026. 4. 9.

발 의 자 : 정춘생 · 황운하 · 서왕진  
강경숙 · 김선민 · 김 윤  
임미애 · 이해민 · 차규근  
신장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등에는 기탁금·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원 정수가 대부분 2인 이상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의원정수가 1인인 다른 선거에 비하여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기탁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의원정수 별로 달리 정하도록 하여 기탁금의 반환 또는 선거비용의 보전 측면에서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의원 정수 별 다음 표의 득표율 구분에 따른 금액

의원 정수	전액	반액
1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
2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2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9 이상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9 이상을 말한다)	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9 미만을 말한다)
3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9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6 이상을 말한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9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미만을 말한다)
4인 이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6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말한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말한다)

제122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의원 정수 별 다음 표의 득표율 구분에 따른 금액

의원 정수	전액	반액
1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

		만인 경우
2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2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9 이상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3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9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9 미만인 경우
4인 이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6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에 따른 기탁금을 반환 또는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p>의 15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 총 수 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p>	<p>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 총 수 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p>
2인	<p>후보자의 득표 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2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 총 수 의 100분의 9 이상을 말한다)</p>	<p>후보자의 득표 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9 이상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 총 수 의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9 미만을 말한다)</p>
3	<p>후보자의 득표</p>	<p>후보자의 득표</p>

인	<p>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9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6 이상을 말한다)</p>	<p>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9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미만을 말한다)</p>
4인 이상	<p>후보자의 득표 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6 이상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말한다)</p>	<p>후보자의 득표 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미만인 경우(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말한다)</p>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나. (생략)

<신설>

선거 및  
-----  
가.·나. (현행과 같음)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나. 의원 정수 별 다음 표의 득표율 구분에 따른 금액

의원 정수	전액	반액
1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2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2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9 이상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
3인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9 이상인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9 미만인 경우
4인 이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후보자의 득표수가

<p>2. (생략) ② ~ ⑤ (생략)</p>	<table border="1"><tr><td data-bbox="818 253 922 445"></td><td data-bbox="922 253 1157 445">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6 이상인 경우</td><td data-bbox="1157 253 1393 445">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미만인 경우</td></tr></table> <p>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p>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6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6 이상인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미만인 경우		